

2009 개정 교육과정상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이 대 성

고양 백신고등학교

I. 문제제기

교육과정의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관심의 대상이었다. 실제로는 교육과정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키고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가 학습자들의 흥미와 발달단계에 의해서 정해지기 보다는 전통적인 학문적 계통성을 따르거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학문분야의 내용이 교과서에서 어떤 정도의 분량으로 다루어지느냐는 그 내용에 관련된 전공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권오정·김영석,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역사, 지리, 일반사회, 도덕(윤리) 영역 간의 치열한 영역 싸움을 넘어서서 이제는 각 영역 내에서도 어느 학년, 어느 단원에 배치될 것이냐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 교육과정 내용 반영 비율에 따라 교사 수급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과에서의 영향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역사영역 독립과 강화는 2012학년도 중등 교사 수급 전망에 있어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역사의 경우는 86명 모집인 반면에 일반사회 36명, 지리 32명, 공통사회 5명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는 4사이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2-3학년)로 교과 내용이 반복·심화되어왔고, 환경확대법과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가 교육과정 내용 배열의 원리로 작동되어왔다. 특히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및 학년간 연계성 강화는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부각되었던 논점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학습자의 학습 부담 경감이라는 근본 취지를 고려한다면 초·중·고 간의 교육과정 내용의 연계성 강화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여진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에서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과 관련하여 몇 가지 흥미로운 논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역사영역의 독립과 강화이다. 주변 국가들의 역사 왜곡과 세계화 시대에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역사교육을 강화해야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회과에서 역사영역이 분리·독립하였고, 기존 6학년 1학기에 편성되었던 것을 5학년 1, 2학기 전체로 확대해 독립적으로 편성하였고, 8학년 사회에서도 역사를 사회과 내 한 과목으로 독립시키고 국사와 세계사만으로 편성하였다(박상준, 2011: 136). 이처럼 역사영역의 내용 조직의 변화는 일반사회와 지리영역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초등학교에서 3학년은 통합 구성을, 4학년과 6학년에서 일반사회와 지리영역을, 5학년에 역사영역을 배열하다 보니 전체적인 연계성 측면에서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8학년의 역사영역 집중 편성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둘째, 교육과정의 대강화이다. 지나치게 상세화된 교육과정 진술이 교육내용을 획일화시키고 교과

서 저자 및 현장교사의 자율성을 크게 제약하다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주제·성취기준을 중심으로 대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저자 및 현장교사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실제 교육과정 대강화로 인해 학습 내용이 증가하고 내용이 어려워지면서 학습자들에게 부담을 가져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이대성, 2010: 59). 셋째, 환경확대법의 탄력적 운영과 학문중심 교육의 강화 움직임이다. 여러 지역들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 의존되어 있는 공간으로 지역을 이해하도록 환경확대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였고, 각 학문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복잡성과 깊이가 점증하도록 구성되었다. 학문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강조하는 분과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이 어렵고 학습량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 주체가 상이하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공통기본과정 상의 교육과정 개발이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 개발 주체가 차이가 있고 서로 다른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다보니 학년간 연계성 확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주제 및 개념 중심의 통합적 접근의 약화와 경제교육 강화 움직임은 2009 개정교육과정 상의 내용 조직의 부실함을 초래하였고(1), '법과 사회'와 '정치'과목이 '법과 정치'과목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 기반의 약화로 인해 과목 내 교육과정 내용의 계열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2011.01.24)에서 발표한 2011 개정 교육과정 개편 움직임에서도 간과할 수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면서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 속에서 금년 말까지 초·중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전 과목의 내용을 개편하여 고시하고, 개편된 내용은 2014학년도에 초1·2, 중1, 고1 학생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학년군과 교과군 도입 취지를 살려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교과내용의 양과 수준을 적정화하고 교과간·학년간 연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처럼 사회과 내 내용의 정선화 및 학년 간 연계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교과 내용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범영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용의 적정화와 연계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법학 영역이 분야와 양이 방대하고 학습자들이 추상적이고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사회과교육과정의 출발과 함께 법교육이 진행되어 왔지만 정치교육의 일부분으로 취급되어 공법중심의 정치·제도적 접근에만 국한되다가 제7차 교육과정의 '법과 사회'과목 탄생과 더불어 비로소 법교육 나름대로의 접근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과정 상의 내용 구성과 배열 논의의 시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범영역은 초등학교 6학년(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중학교 1학년(우리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고등학교 1학년(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고등학교 2·3학년(우리나라의 헌법,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에서 법관련 단원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며 학년간 연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법교육과정의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는 경험문제 중심의 실용주의적 입장과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학문체계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되고, 법교육 내용 배열의 원리에는 학문적 논리에 따른 법률개념 확대 배열, 학습자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 단계²⁾, 법률관계 및 경험 확대에 따른 배열³⁾ 등이 꾸준히 논의되

1) 2007 개정교육과정 상에 고등학교 1학년(일반사회)의 내용은 문화, 정의, 세계화, 인권, 삶의 질이라는 스트랜드를 중심으로 주제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경제교육의 약화 우려에 기반한 학문중심교육의 강화 움직임에 부딪쳐 결국은 예전대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이러한 개편 논의와 새롭게 편성된 9-10학년 교육과정 내용 구성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어 왔다. 주로 나선형 교육과정 논의와 연계하여 법률개념 확대 배열을, 환경확대법의 논의와 연계하여 법률관계 및 경험 확대에 따른 배열을 고려하였다.

법교육 내용으로 제시된 주요 법개념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는 법개념을 추려낸 정도의 법학의 기본학 습내용을 나열한 평면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나선형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 개념을 위계화해야 한다. 사회과의 법교육과정에 있어서 학문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개론(통론)의 구체적 내용 요소는 공통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다양하다. 이는 내용영역이 방대하고 계속 확대 중이라는 법학의 특성과 교재를 저술한 편저자들의 전공 배경의 다양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내용 요소는 교재에 따라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내용 구성과 내용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찾을 수 있다. 크게 총론과 각론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총론에서는 법의 기본적 개념이나 원리, 기타 법학을 구성하는 기초 이론 소개를, 각론에서는 개별법 영역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헌법, 행정법, 국제법, 사회법, 민법(소송법 포함), 형법(소송법 포함), 상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⁴⁾ 이러한 학문지식에 기반한 내용 요소는 법교육 관련 내용 요소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헌법교육을 비롯해서 경제교육, 시민교육 등에서도 연계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주로 내용 분석 수준에 그칠 뿐 좀 더 세밀한 학년별 연계성 논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강호일, 2007; 윤상영, 2011; 이미정, 2007; 이민정, 2009).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상의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계성은 크게 계속성과 계열성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계속성은 주요 학습 요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가이며, 계열성은 후속학습 경험이 전 단계의 학습경험보다 점차 확대 심화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문지식으로서의 법학 영역별 기초 개념과 원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학교지식으로서의 초·중·고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헌법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보고자 한다. 헌법은 크게 헌법의 기초이론, 통치구조, 기본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내용들이 초·중·고 단계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연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의미가 크다. 학년별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과지식구조로서의 법교육 연구의 시초가 될 것이며, 헌법과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내용 구성과 배열 논의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다만, 범발달론적 관점, 법률관계확대법

- 2) 오연주(1998)의 연구에서는 범발달론적 관점에서 사회와 법단원을 분석하고 있다. 내용선정으로 추려진 주요 개념들이 학문의 구조원리로 도출된 것이 아니므로, 내용 배열을 위하여 다시 이를 위계화해야 한다. 개념들의 위계화를 할 때 그 기준을 학문의 구조에서 찾을 수 없다면, 그 대안은 아동의 발달의 차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고, 이를 토대로 법교육 내용 선정과 배열의 시사점을 제공받고 있다.
- 3) 제7차 '법과 사회' 교육과정의 내용 배열 원리는 학습자의 법률관계와 경험 확대를 고려하여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가생활과 법 단원으로 구성하였으나, 실제로 담긴 내용들은 민법, 사회법, 헌법, 행정법과 형법 등으로 사실상 법학개론의 체계나 기존의 법학에서 다루는 법전에 의한 구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공법-사법-사회법의 구분도 아닌 법 영역에 의한 구분은 전문 법학도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교육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일관된 주장이 제기되었다(조우영, 2005; 진재관 외, 2006). 법 현상 자체가 이미 국가생활을 전제로 하여 나타나는 규범 현상인데, 그럼에도 굳이 법이 다루고 있는 생활 영역을 개인과 사회, 국가로 구분할 경우 내용이 중첩되거나 필요한 내용이 빠지고 혹은 여러 부분에서 중첩된다. 따라서 법 영역의 학습 경험은 "기초적 법의식 형성→국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형성→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절차의 이해→생활 속의 권리교육"으로 순차적으로 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박성혁 외 2005), 2007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들에게 관련성을 갖는 헌법을 시작으로 법인식의 접근이 바뀌게 되었다.
- 4) 자세한 내용은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위한 표시과목 '일반사회'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E-2008-6-9)와 김국현 외(2010)의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의 논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문의 구조에 치우쳐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II. 2009 개정 법교육과정과 내용 배열의 문제

1. 2009 개정 법교육과정 내용

2009 개정 법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사회’ 과목의 6학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단원으로, 7학년 사회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 보호와 헌법’ 단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고, 또한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법과 정치’ 과목에서도 법관련 단원이 배정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 <표 1> 과 같다.

<표 1>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법관련 내용 요소

| 학교급 | 학년 | 단원 | 내용 요소 |
|------|-----|--------------|--|
| 초등학교 | 6 |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 민주주의와 참여 ◦ 헌법의 핵심 내용, 우리 일상생활과 법 ◦ 국회, 행정부, 법원의 구조와 기능, 권력분립의 원리 ◦ 국민의 권리, 인권 존중 태도 ◦ 공공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권 의무 ◦ 관용, 대화, 타협, 절차 준수 등 민주주의 실천 태도 |
| 중학교 | 1 | 우리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일상생활과 법 ◦ 법의 의미와 기능 ◦ 사법 제도와 그 원리 ◦ 일상생활과 직업생활 속의 자신의 권리 ◦ 법적 쟁점의 합리적 해결 방안 |
| | | 인권보호와 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식의 성장과 헌법의 관계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보호 수단 ◦ 정부의 성격과 형태 ◦ 기본권 실현과 타인의 권리 존중 시민의식 |
| 고등학교 | 1 |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보장의 의미와 법의 역할 ◦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 원리와 기본권 제한 한계 ◦ 개인의 권익 침해 행위와 법적 구제 수단 ◦ 법 제도에 대한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 인권의식과 법의식 ◦ 인권 및 사회정의와 관련된 쟁점 해결 |
| | | 우리나라의 헌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 ◦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
| | | 개인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의 기본원리 ◦ 계약과 불법행위 ◦ 가족관계와 법 ◦ 부동산 관련법의 이해 ◦ 개인 간의 분쟁 해결의 절차와 방법 |
| | 2-3 | 사회생활과 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와 형벌의 종류 ◦ 형사절차의 이해 ◦ 행정 구제 제도 ◦ 청소년의 법적 지위와 학교 생활 ◦ 소비자의 권리와 법 ◦ 근로자의 권리와 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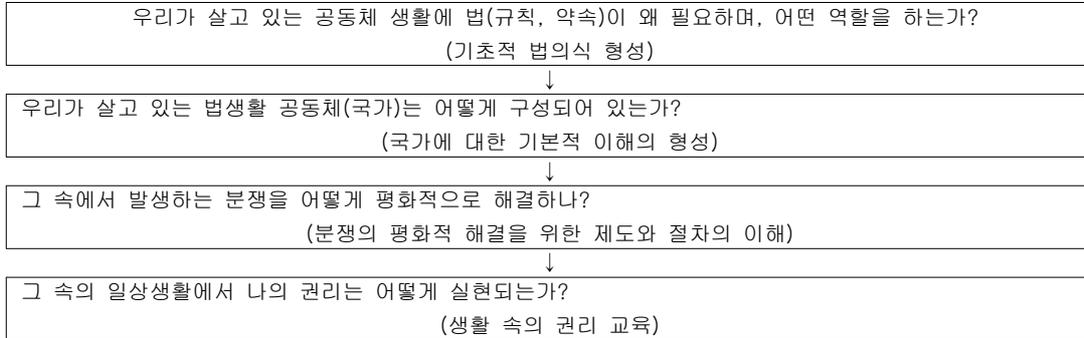
2. 법교육과정에서 내용 선정과 배열의 문제

법교육 내용 선정과 관련해서는 크게 경험문제 중심의 실용주의적 입장과 사회과학으로서의 법학의 학문 체계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대별된다(최인화, 1992: 23-24). 전자는 경험주의 교육관에 기초하여 학생이 체험하는 일상의 범생활 속의 법적 쟁점이나 갈등상황을 해결·극복해 낼 수 있는 법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후자는 법학의 학문적 성과나 연구방법 그리고 지식의 구조 이해 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사회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 법개념과 이론체계의 학습을 강조하며 법적추론의 과정에 대한 학습기회를 다양한 판례 등을 탐구검토함으로써 이루려고 한다. 훌륭한 시민성은 지적 사고와 도덕적 행위를 포함하는 합리적 의사결정행위가 공공의 문제에 적용되는 본질을 지녔다고 할 때 바람직한 법교육의 내용선정은 법적 개념과 실용주의적 법지식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리라 본다. 법교육 내용 배열의 문제는 학문적 논리에 따른 배열, 학습자의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에 따른 배열,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배열 등이 있다(최인화, 1992). 우선 학문적 논리에 따른 배열은 법적 개념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단순한 내용에서 복잡한 것으로, 직접 경험이나 관찰할 수 있는 것에서 자료활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급별에 따른 법교육 내용 배열은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사회기능적 요소를 강조하며 법교육 전반에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초적인 법개념을 포괄적으로 가르치며 중고교에 이르러 개인과 사회가 당면한 법적 문제 사태에 법의 기본원리를 응용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탐구지향적인 현대사회의 문제 등을 심층깊게 다루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인지발달 및 도덕성 발달에 따른 배열은 법교육의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법적 발달을 학습자의 인지구조 발달 및 도덕성발달의 단계에 맞추어 그 내용선정 및 배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법은 사회규범 중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시민 등에 구속성과 함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이해하는데는 형식적 조작의 사고에 의존하는 바가 커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에게 적합한 학습이라는 측면이 강하다. 그렇지만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젊은 민주시민으로서 법적 기능과 준법의식을 행사하려면 법에 관한 학습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미국 법교육에서도 심지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법교육을 추진하자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법률관계 확대에 따른 배열은 법교육의 내용을 배열함에 있어서는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고 관찰이 가능한 법률관계나 법적체제에서부터 시작하여 법적인 추상적 사고 논리의 전개를 필요로 하는 국가세계차원의 법 관련 쟁점이나 관계들을 분석 이해시켜 나감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법이나 국제법의 주요 쟁점이나 원리를 곧장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은 학습자에게는 너무나 생소하고 경험의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습자의 사회생활관계나 법률관계의 확대에 따라 법교육 과정상의 내용은 처음에 사적이고 개인분위적인 것에서 점차로 전문적이고 사회지향적인 법개념 원리들로 배열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내용은 학년·학교급별에 따라 심화되고 반복되는 나선형 개념발달 형태를 취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7차 법교육과정에서는 법률관계 확장 구조를 염두해 두고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국가생활과 법’이라는 대단원으로 구성하였으나 박성혁 외(2005)는 법 현상 자체가 이미 국가 생활을 전제로 하여 나타나는 규범 현상인데, 그럼에도 굳이 법이 다루고 있는 생활 영역을 개인과 사회, 국가로 구분할 경우 내용이 중첩되거나 필요한 내용이 빠지고 혹은 여러 부분에서 중첩된다고 비판하면서 법영역의 학습 경험

의 순서를 다음 <그림 1> 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 법영역 학습 경험의 순서



2009 개정교육과정상의 내용선정과 배열의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선 우선 교육과정 문서를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상의 '사회' 과목과 '법과 정치' 과목의 내용 선정과 배열 원리는 지면 관계상 생략)

Ⅲ. 2009 개정 법교육과정 상의 초·중·고 계열성 분석: 학문 지식을 중심으로

1. 분석 대상

초·중·고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교과서 상의 법관련 단위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09 개정 법교육과정 상의 초·중·고 교과서 중에서 각 1종씩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단원을, 중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중에서는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단원을, 고등학교 1학년 사회교과서 중에서는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단원을,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육과정 내용 중에서 '우리나라의 헌법',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단원의 핵심 개념과 원리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을 정리하면 <표 2> 와 같다.

<표 2> 분석 대상 교육과정과 교과서⁵⁾

| 학교급 | 학년 | 자료 형태 | 단위 | 비고 |
|-----|-----|-------|----------------------------|---------|
| 초 | 6 | 교과서 |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 교육과학기술부 |
| 중 | 1 | 교과서 | 우리의 생활과 법, 인권보호와 헌법 | 금성출판사 |
| 고 | 1 | 교과서 | 인권 및 사회정의와 법 | 금성출판사 |
| 고 | 2-3 | 교육과정 | 우리나라의 헌법, 개인생활과 법, 사회생활과 법 | 천재교육 |

5) 초등과 중학교 교과서는 이미 출판이 된 상황이라서 분석이 가능하지만,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는 검인정을 통과 하였지만 아직 미출판된 상황이라서 교육과정과 해설서 내용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검인정에 따라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 있지만 비교적 선호도가 높고 여러 출판사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성출판사 1종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2. 분석 기준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해선 분석 기준이 필요하다. 연계성 분석을 크게 계속성과 계열성 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계속성은 중요한 학습 내용이나 요소가 단 한번의 수업에 의해 학습자에게 완전하게 가르쳐질 수는 없으며, 따라서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 중요 학습의 요소가 어느 정도 학습자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계열성은 학습자의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학습 내용의 폭과 깊이가 점차 확장되어 가도록 교육과정을 조직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인지능력을 계속 확장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우선 법학 관련 선행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학문지식에 기초한 법학 개념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계속성과 계열성이라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초·중고 법관련 내용과 헌법교육 관련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할 수 있다. 상세한 분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관련 내용이 학년별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가에 대한 분석이다. 학년별로 법관련 주요 개념과 원리의 배치를 한눈에 살펴봄으로써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학문지식에 기초한 법학 개념 체계가 학년별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다. 학년별로 법관련 내용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전반적인 법관련 개념의 위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법학영역 내용분석틀을 설정하기 위해 대학교재라고 할 수 있는 법학개론(총론) 교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총론 부분에서는 법의 기본적 개념이나 원리 기타 법학을 구성하는 기초 이론을 소개하고 있으며 각론 부분에서는 개별법 영역의 주요 개념과 원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각론에서 다루는 개별법 영역에는 교재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적으로 헌법, 행정법, 국제법, 사회법, 민법, 형사법 등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소송법 영역, 상사법, 조세법, 국제사법, 소비자보호법, 여성 관련 법 등 다양한 개별법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김국현 외, 2010; 모경환 외, 2008). 이를 토대로 현행 법교육과정의 내용요소를 종합하여 <표 3> 과 같은 내용분석틀을 설정하였다.(<표 3> 은 생략)

둘째, 학년별로 헌법 관련 세부 내용이 어떻게 심화확대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즉, 모든 학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헌법 관련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년별로 어떻게 내용이 반복심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2009 개정 법교육과정에서 전반적으로 헌법내용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헌법 내용은 크게 헌법의 기초이론(총론), 기본권론, 통치구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학 관련 대학 교재 내용 구성 요소와 함께 현행 교육과정 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표 4> 와 같이 헌법영역 내용분석틀을 설정할 수 있다.(<표 4> 는 생략)

3. 분석 결과 및 논의

가.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실제 초·중고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법관련 단원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법 내용의 연계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우선 교육과정과 교과서 상의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등에 포함된 주요 법 개념과 원리를 정리해 보았다. 그 분석 결과는 다음 <표 5> 와 같다.

| | | | | | | | |
|--|--|--|--|--|--|--|--|
| | | | | <p>헌법의 의미와 판쟁해의 원칙(합선, 조쟁, 중재)</p> |
|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p>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국민주권, 평등, 인권의 보장, 기본권, 행정, 입법, 사법, 헌재)</p>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국민주권, 평등, 인권의 보장, 기본권, 행정, 입법, 사법, 헌재)</p>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국민주권, 평등, 인권의 보장, 기본권, 행정, 입법, 사법, 헌재)</p>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국민주권, 평등, 인권의 보장, 기본권, 행정, 입법, 사법, 헌재)</p>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국민주권, 평등, 인권의 보장, 기본권, 행정, 입법, 사법, 헌재)</p> | <p>헌법의 개념과 기본원리(국민주권, 평등, 인권의 보장, 기본권, 행정, 입법, 사법, 헌재)</p> |
|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p>기본적 권리와 의무(기본권 제한, 침해 구제 포함)</p> |
|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p>통치구조(국회, 대통령, 정부, 선관위, 법원, 헌법재판소)</p> |
|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p>행정법의 의의와 기본원리</p> |

결과는 다음 <표 6> 과 같다.

<표 6> 헌법교육 내용의 연계성 분석 결과

| 내용 영역 | | 내용 요소 | 초등 6학년 |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 고등학교 2-3학년 |
|------------------|-------------------|----------------------------|------------------------------------|------------------------------|-----------------------|----------------------------|
| 총론 (헌법의 기초이론) | 헌정사 | 제헌사 | | 제헌헌법의 형성과정 | | |
| | | 개헌사 | | | | |
| | 헌법이론 | 헌법의 개념과 분류 | 헌법의 개념 | 헌법의 기능 | 헌법의 의미와 특징 | 헌법의 정치·법적 의미 |
| | | 헌법관(실증/결단/통합) | | | | |
| | 기본원리 | 헌법전문 | | 자유민주주의 원리(헌법관련 내용 인용) | | 헌법의 기로 제시 |
| | | 국민의 개념과 국가영역 | | 국민주권주의(제1조②) |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헌법 제10조) | |
| | | 평화주의 | | 국제평화주의(제5조①), 평화통일원리(제4조) | | |
| | | 민주적 기본질서 | | | | |
| | | 정당제도 | | | 정당의 의미 | 정당의 기원과 의미, 정당성, 정당복제도 |
| | | 선거제도 | | | 선거 참여 방법, 선거 연령 | 선거제도 유형, 라도 선의우선제 특징 |
| | | 사회적 규범원리(법치국가, 사회국가, 문화국가) | 법치국가, 사회국가의 의미 | 복지국가의 원리(제34조), 입헌주의의 내용과 의미 | 헌법의 기로 제시 | 헌법의 기로 제시 |
| | 헌법 수호, 국가긴급권, 저항권 | | 헌법보호의 의미와 중요성, 헌법보호의 수단, 헌법보호와 저항권 | | | |
| 기본권 | 이론 | 기본권의 개념과 기능 | 인권(기본권)의 개념 | 기본권의 종류, 의미, 발전 과정 | 기본권(인권)의 의미와 성격 | 기본권 내용과의 의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
| | | 기본권의 제한, 침해와 구제 | 인권침해시 단체를 통 | 기본권제한, 재산권행사 | 기본권 구제를 국가 | 기본권 제한의 조건 |

| | | | | | | |
|---------|------------------------------|------------------------------|---|-------------------------|--------------------|--------------------|
| | | | | 의 구성과 기능 | | |
| | 통치원리(국민주권, 권력분립, 의회주의, 법치주의) | 권력분립의 의미, 의회주의의 의미, 법치주의의 의미 | 권력분립의 원칙과 기능, 법치주의의 의미 | 법치주의의 권력원 | 법치주의의 연계 | 법치주의의 연계 |
| | 대한민국 정부형태 변동사 | |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변동사 | | 정부 형태 변동사 | 정부 형태 변동사 |
| 국회 | 의회제도의 개념과 의의 | | | | | |
| | 국회의 헌법상 지위와 타 기관과의 관계 | 국회의 헌법상 지위 | | | | |
| | 국회의 구성, 조직 | 국회의 구성 | 국회의 구성 | 국회의 구성 | 국회의 구성 | 국회의 구성 |
|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 법제정 과정 | | | |
| | 국회의 권한 | 국회의 권한 | 국회의 기능 | 국회의 권한 | 국회의 권한 | 국회의 권한 |
|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의무 |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 의무 | 국회의원의 역할 | | | |
| 대통령 | 대통령의 지위 | 대통령의 지위 | 대통령의 지위를 헌법 조문으로 제시 |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
| |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수반, 군통수권) |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 조문으로 설명 | 행정부수반으로서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의 권한 |
| 정부 | 정부의 개념과 구조 | 정부의 구성 | 정부의 구성과 기능 | 정부의 개념 | | |
|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 | 국무총리의 지위와 권한 | | | | |
| | 자문기관 | | | | | |
| | 행정 각부 | 행정 각부의 구성과 조직 | | 행정 각부의 의미 | 행정 각부의 조직과 기능 | 행정 각부의 조직과 기능 |
| | 감사원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위원의 지위와 구성 | | | | | |
| | 선거운동과 선거공영제 | | | | | 선거공영제의 의의 |
| 법원 | 법원의 지위와 사법권의 독립 | 사법권의 독립의 의미 | 사법기관의 역할과 독립의 의미, 공개재판주의, 사법부 독립의 의미와 필요성 | 사법부의 역할과 독립, 사법부 독립의 의미 | 법원의 지위와 기능 및 사례 제시 | 법원의 지위와 기능 및 사례 제시 |

| | | | | | | |
|--|-------|---------------|-----------|-----------------------------|--------------------------|-------------------|
| | | 법원의 조직과 권한 | 법원의 권한 | | | 법원의 조직과 권한 |
| | | 사법절차와 운영 | 심급제도 | 심급제도, 민사(형사) 재판절차, 국민참여재판제도 | 형사, 고소절차, 국민참여재판제도, 일원제도 | 사법제도 운영실의 원리와 제도 |
| |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의 의의와 절차 | 헌법소원의 의의 | 헌법재판의 종류와 내용 | 위헌법률심사, 헌법소원제도 | 헌법재판(위헌법심판, 헌법소원) |
| | | 세계의 헌법재판제도 | | | | |
| |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조직 | | | 헌법재판소의 구성 | 헌법재판소의 위상과 조직 |
| | | 헌법재판소의 권한 | 헌법재판소의 역할 | 헌법재판소의 기능, 헌법소원과의 법재판소호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기능(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 |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 |
| | 지방자치 | 지방자치의 의의와 종류 | | | 지방자치제도의 의의 | |
| | | 지방자치제도의 운영 | | | | |

위의 분석 결과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헌법의 개념과 분류는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었으나 헌정사, 헌법관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헌법의 기본원리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사례나 조문 제시를 통해 학습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었다.

셋째, 기본권과 인권 개념이 혼재되면서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으며 기본권 제한에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 방향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 방법의 범위 확대로 이어졌다.

넷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의 성격과 종류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단, 청구권의 종류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였다.

다섯째, 국민의 의무의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고등학교에 와서는 고전적 의무와 현대적 의무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여섯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고, 우리나라 정부형태의 특징과 변천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2-3학년에서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일곱째, 국회의 구성과 권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정부의 구성과 기능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고, 감사원과 선관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단,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만 등장하였다.

여덟째,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고, 헌법재판제도의 종류도 범위가 확대되었다. 단, 선거공영제에 대한 내용이 고등학교 2-3학년에서 잠깐 언급되었고, 지방자치제도의 의의도 고등학교 1학년 정치 단원에서 잠깐 언급되었다가 사라졌다.

IV. 맺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사회과 내용의 선정과 조직 원리에 한계점을 노정하였고, 무엇보다 사회과 내용의 정선화 및 학년 간 연계성 확보는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제7차 교육과정 이후 지속적으로 교과 내용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법영역의 경우에 있어서도 내용의 적정화와 연계성 확보는 시급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상의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계성을 크게 계속성과 계열성으로 대별해 보고, 주요 학습 요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다루고 있는가의 문제와 후속학습 경험이 전 단계의 학습경험보다 점차 확대심화되고 있는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지식으로서의 법학 영역별 기초 개념과 원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학교지식으로서의 초·중·고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헌법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그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기초이론→헌법→민법, 형법→행정법, 사회법(소비자권리보호, 근로자권리보호), 국제법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었으며, 헌법 영역은 전 학년에 계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둘째, 법의 목적과 기능, 헌법의 성격과 기본원리, 기본권의 종류와 의무, 통치구조(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셋째, 법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제도 영역에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범죄의 의미와 종류, 형벌의 종류, 형사절차와 기본권 보장 내용도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었다.

다섯째, 헌정사와 헌법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학년별 법관련 내용의 연계성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교과지식구조로서의 법교육 연구의 시초가 될 것이며, 헌법과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내용 구성과 배열 논의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다만, 법발달론적 관점, 법률관계확대법의 논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문의 구조에 치우쳐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는다.

〈참고 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09).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_____(2010). 2009 개정 사회과교육과정 해설서. 교육과학기술부.
 _____(2011). 2011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 교육과학기술부.
 _____(2011). 초등학교 사회 6-2 교과서. 교육과학기술부.
 권오정·김영석(201).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교육과학사.
 김국현 외(2010). 교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교과지식의 재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김영석(1998). 미국 초등 사회과 Sequence 복합구조의 변천 과정(1940-1990).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일기 외(1998). 제7차 교육과정의 상세화를 통한 사회과 내용체계에 관한 연구. 교육부 위탁과제 81160-43

- 의 답신보고서. 한국교원대 사회과교육과정 연구위원회.
- 강호일(2007). 제7차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내용의 연계성 분석. 부산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경환 외(2008). 2009학년도 개편 중등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위한 표시과목 '일반사회'의 교사 자격 기준 개발과 평가 영역 상세화 및 수업 능력 평가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서.
- 박성혁 외(2005). 초·중등 법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개발 연구. 법무부.
- 박상준(2011). 사회과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 서태열 외(2010). 중학교 사회 1학년 교과서. 금성출판사.
- _____ (2010). 고등학교 사회 1학년 교과서. 금성출판사.
- 이경섭 외(1982). 교육과정. 교육과학사.
- 이대성(2010). 2007 개정 교육과정 상의 7학년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법관련 내용 분석: 교육과정 대강화의 한계, 「사회과교육연구」, 16(4), pp.55-69.
- 이민정(2009).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 관련 내용 분석.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정(2007). 사회과 교과서 경제관련 내용의 계열성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연주(1998). 사회과 법 단원의 범발달론적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상영(2011). 고등학교 사회과 헌법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우영(2005). 학교 '법과 사회' 과목 내용 구성 방안, 「사회과교육연구」, 12(2), pp.181-204.
- 진재관 외(2006).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최인화(1992). 법교육과정의 적정성 탐색.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